
기관 이용 안내서

(급여이용 정보제공)



1. 운영규정 개요

1. 【입소정원】

- 예사랑요양원의 입소정원은 55인으로 한다.

2. 【입소계약】

(1) 입소대상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은 자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노인성 뇌혈관 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
 - 3·4·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써 [시설급여] 이용가능 자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은 없지만 노인성 질환 및 뇌혈관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어 수발자의 전적인도움이 필요한 자
- ③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노인
- ④ 위의 ①,②,③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2) 입소절차

- 입소를 위한 사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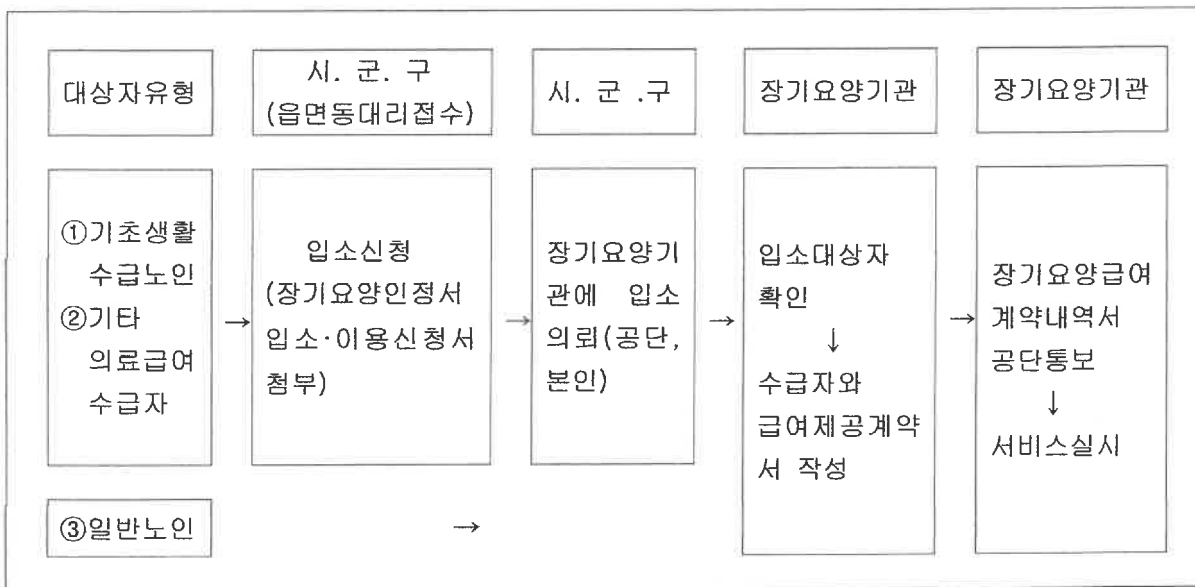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 등급 시설급여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입소하여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한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장기요양기관 입소

- 노인요양시설 예사랑요양원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보건복지부 입소 상세 절차〉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 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 2) 시군구에서는 입소 여부와 입소 시설 결정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 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 의뢰하거나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입소의뢰 가능

-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자임

-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 5)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1부는 장기요양기관 보관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내용 ·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을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나. 일반노인

- 1)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 2)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 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3) 이하 위의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4)~6)과 동일함.

(3) 구비서류

: 노인요양시설 예사랑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 - 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1부(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신분증 사본(입소자/보호자)
4. 입소이용신청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5.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7.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필요시)
8. 신체제재에 관한 설명 및 보호자 동의서
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0. 가정간호진료, 계약의사진료, 협력되어 있는 병원 진료 및 약국 이용 등의 동의서
11. 낙상위험에 대한 설명서 및 동의서

(4) 입소계약

: 노인요양시설 예사랑요양원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부모, 형제) 또는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 3) 계약 기간 - 입소 의뢰나 신청 시 입소 기간을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며, 계약 기간은 별도의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4) 입소 기간의 연장 - 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 기간을 연장 한다.
-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입소이용료의 변경은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대표자가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 6)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노인요양시설 예사랑요양원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 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여가선용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입소 비용(월 이용료,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노인요양시설 예사랑요양원의 의료지원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의 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7)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③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 내용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낙상 예방을 위한 낙상 가드 설치 및,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 ④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 (산소 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호스피스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침실(호스피스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8) 계약서 - 입소 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명,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 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9) 계약서 부분 발부 - 입소계약서는 반드시 부분을 발부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10)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서비스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권리
- 입소자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요청의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 연락처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시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해야 할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1) 입소자의 의무

- ①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 ⑤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1) 입소 보증금 : 없음
- 2)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 제공 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 3)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를 산정한다.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 의사가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시설지정병원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사후처리는 보호자의 의견에 따른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정기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 ① 병원 진료 수일 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②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③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을 취한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5)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때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 어르신의 병원 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시설의 직원 동행은 되지 않습니다.)

(6)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시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입소자 사망 시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 정신질환자 판정 시
 - 입소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시
 - 입소자가 배회 또는 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시설 종사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거나 폭행 시
 - 시설 운영에 관하여 비협조적이거나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상습적인 음주 후 면회 요청 시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했을 시

5. 【시설물 사용 안내】

-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 노인요양시설 예사랑요양원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II. 종사자 근무체계

1.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2026년 1월1일 기준 노인요양시설 예사랑요양원 직원 사항

팀	직 위	배치인원	업무내용	자격사항
복지행정팀	시설의장 (총괄책임)	1	시설총괄관리	사회복지사 2급
	위생원	1	1. 세탁, 폐기물, 위생 등과 관련한 업무 일체 2. 그 밖의 시설장이 지시하는 사항	
	관리인	1	1. 시설 소독, 방법, 장비, 시설유지·보수 등과 관련한 업무 일체 2. 입소자 병원 진료시 동행 도움 및 물품구매 3. 그 밖의 시설장이 지시하는 사항	
	사회복지사	5	1.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2. 입소자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무·행정, 회계 3. 사회복지사 및 시설장 업무보조	사회복지사 2급
간호재활팀	간호(조무) 사	2	입소자의 병력사항, 건강수준, 의약, 응급상황 등의 관리 및 간호서비스 일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	1	입소자의 물리치료, 건강수준, 응급상황 등의 관리 및 기능회복 훈련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생활지원팀	요양보호사	22	1.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2. 입소자의 일상생활 수발, 생활환경 및 개인 위생관리, 급여제공의 기록 등	요양보호사 1급

2. 근무형태

- (1) 2교대 근무 : 주-야간 근무 (주주/야야/휴휴)
 (2) 주간(요양) : 평일/주말근무 - 2일 휴무
 (3) 주간(기타) : 평일근무 - 주말 휴무

순 번	소 속	종사자		업무대행자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1	복지행정팀	김남언	시설장	이상숙	사회복지사(부원장)
2	복지행정팀	이상숙	사회복지사(부원장)	김남언	시설장
3	복지행정팀	허자영	사회복지사(사무국장)	신선미	사회복지사(주임)
4	복지행정팀	신선미	사회복지사(주임)	장지은	사회복지사
5	복지행정팀	장지은	사회복지사	김희경	사회복지사
6	복지행정팀	김희경	사회복지사	장지은	사회복지사
7	간호재활팀	김명희	간호조무사	김미조	간호조무사
8	간호재활팀	김미조	간호조무사	김명희	간호조무사
9	간호재활팀	김향언	재활치료사	허자영	사회복지사(사무국장)
10	생활지원팀	김정임	요양보호사	최윤경	요양보호사
11	생활지원팀	최연이	요양보호사	김은화	요양보호사
12	생활지원팀	이미숙	요양보호사	이은옥	요양보호사
13	생활지원팀	이은옥	요양보호사	최영미	요양보호사
14	생활지원팀	이윤정	요양보호사	오지연	요양보호사
15	생활지원팀	유혜민	요양보호사	황현자	요양보호사
16	생활지원팀	최월선	요양보호사	최정심	요양보호사
17	생활지원팀	박규녀	요양보호사	조미경	요양보호사
18	생활지원팀	최영미	요양보호사	이은옥	요양보호사
19	생활지원팀	강신자	요양보호사	라미옥	요양보호사
20	생활지원팀	이효숙	요양보호사	공기순	요양보호사
21	생활지원팀	라미옥	요양보호사	강신자	요양보호사

순 번	부 서	종사자		업무대행자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22	생활지원팀	김숙	요양보호사	정진희	요양보호사
23	생활지원팀	최윤경	요양보호사	원경옥	요양보호사
24	생활지원팀	오지연	요양보호사	이윤정	요양보호사
25	생활지원팀	김은화	요양보호사	최연이	요양보호사
26	생활지원팀	최정심	요양보호사	최월선	요양보호사
27	생활지원팀	경정숙	요양보호사	최영미	요양보호사
28	생활지원팀	공기순	요양보호사	이효숙	요양보호사
29	생활지원팀	황현자	요양보호사	유혜민	요양보호사
30	생활지원팀	조미경	요양보호사	박규녀	요양보호사
31	생활지원팀	정진희	요양보호사	김숙	요양보호사
32	생활지원팀	김명혁	위생원	김남언	시설장
33	생활지원팀	유연	위생원	김명혁	위생원

III.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2. 시설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등급 1,2,3,4,5 등급

노인요양시설 예사랑요양원 입소비용료 (2026)

■ 입소보증금 : 없음

■ 입소비용 (30일 기준)

■ 인력배치기준(2.1:1)

내역구분	항 목	산출내역			소 계					
7.37% 인상		1일 급여	일 수	금액	30일			31일		
					20%	12%	8%	20%	12%	8%
1 내역구분	시설이용	93,070	30	2,792,100	558,420	335,050	223,360	577,030	346,220	230,810
	식재료비	11,400	30	342,000	372,000			384,400		
	간식비	1,000	30	30,000						
본인부담금					930,420	707,050	595,360	961,430	730,620	615,210
2 내역구분	시설이용	86,340	30	2,590,200	518,040	310,820	207,210	535,300	321,180	214,120
	식재료비	11,400	30	342,000	372,000			384,400		
	간식비	1,000	30	30,000						
본인부담금					890,040	682,820	579,210	919,700	705,580	598,520
3 내역구분	시설이용	81,540	30	2,446,200	489,240	293,540	195,690	505,540	303,320	202,210
	식재료비	11,400	30	342,000	372,000			384,400		
	간식비	1,000	30	30,000						
본인부담금					861,240	665,540	567,690	889,940	687,720	586,610
* 비급여 항목 : 식재료비 1식* 3,800*3식 =11,400원 간식비 1회* 1,000 =1,000원										
* 진료비, 약제비 , 의료용소모품 등은 실비로 별도로 부담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										
* 비용은 일수로 산정됩니다.(28,29,31일 경우)										

IV.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1. 식재료비 (30일 기준)

- 1식 3,800원(1일 3식/11,400원 * 30일 = 342,000원)

2. 간식비 (30일 기준)

- 1일 1,000원(1일 1회/1,000원 * 30일 = 30,000원)

3. 기타

- 이·미용비 : 무료(자원봉사 방문)

V. 시설규모 및 설비현황

1. 시설규모

(1) 건축개요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 1(송의동)
지역, 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대지면적	442.70 m ² (건축물대장면적에 의거)
건축면적	291.87 m ²
연면적	1,308.66 m ²
건폐율	65.93 %
용적율	272.52 %
정화조	310인조

(2) 층별면적표

층 별	면적 및 용도	면적
지하층	세탁실 및 요양보호사실, 기계실	102.20m ²
지상1층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재활치료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284.74m ²
지상2층	생활실, 세면장 및 목욕실, 화장실, 간호사실	287.67m ²
지상3층	생활실, 세면장 및 목욕실, 화장실, 간호사실	270.27m ²
지상4층	생활실, 세면장 및 목욕실, 화장실, 간호사실, 요양보호사 휴게실, 특별침실(호스피스실)	260.72m ²
지상5층	조리실, 식당, 하늘정원	103.06m ²
합 계	노유자시설(요양원)	1,308.66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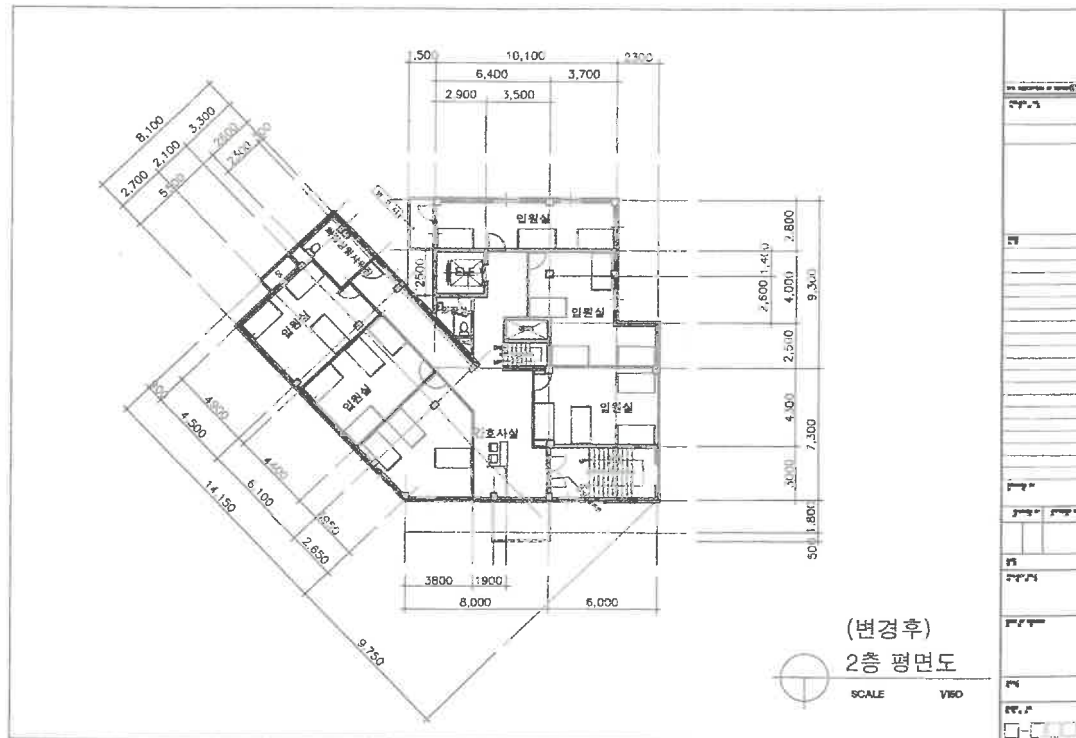
2. 시설설비

구 분 시 설	침 실	사 무 실	요양 보호 사실	자원 봉사 자실	간호 사실	물 리 (작 업 치 료) 실	프로 그램 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화 장 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예사랑 요양원	15	2	1	1	3	1	1	3	10	3	1

(1)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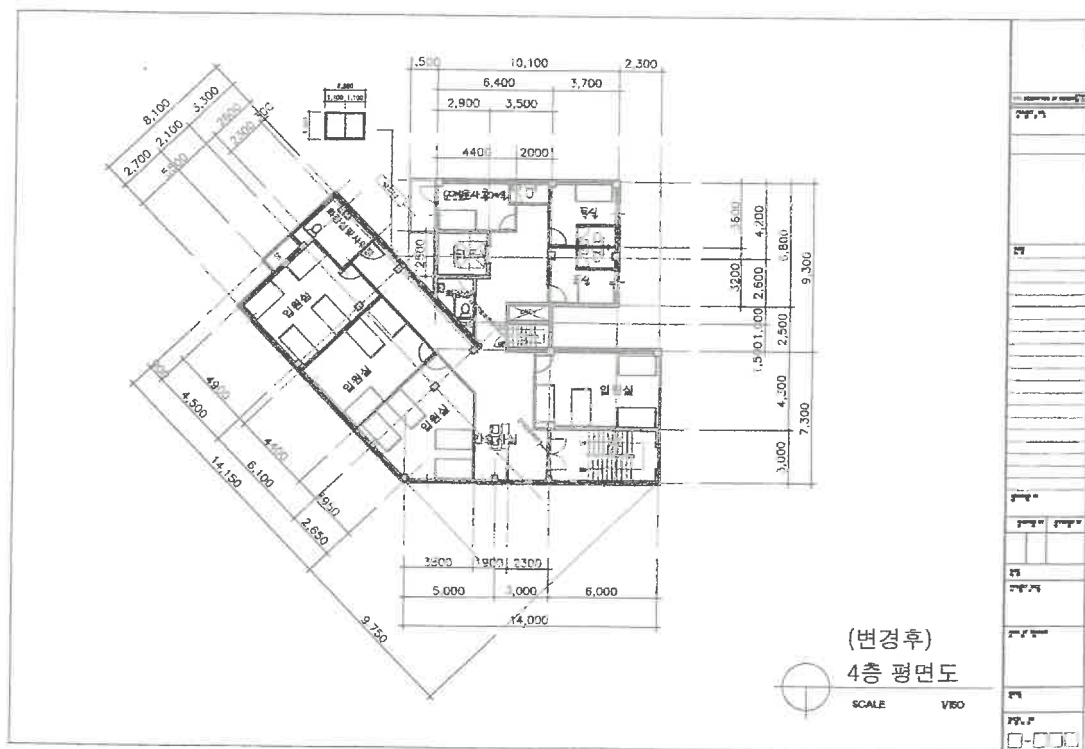


(2)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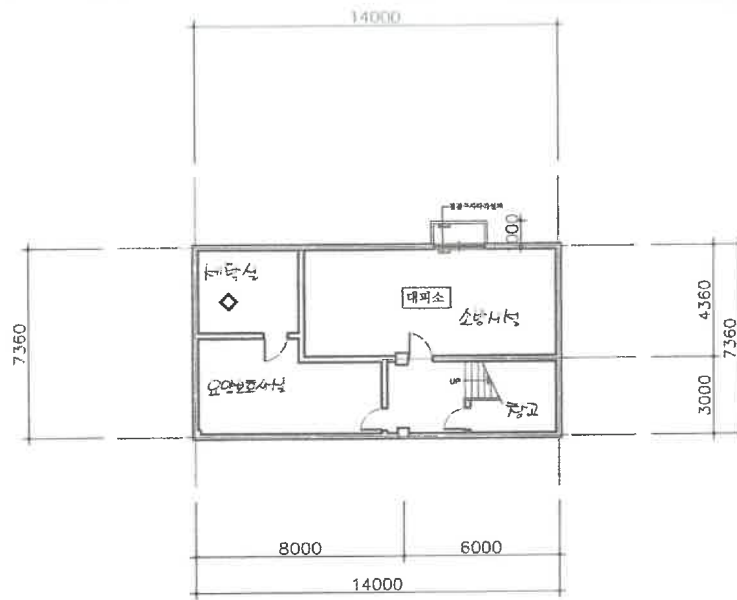
Architectural floor plan of the 3rd floor (3층 평면도) after boundary adjustment (변경후). The plan shows a complex building layout with various rooms, corridors, and structural elements. Dimensions are provided in meters (m) and millimeters (mm). Key dimensions include overall width of 10,100m and 7,300m, and overall depth of 9,300m and 9,700m. The plan includes a north arrow and a scale bar indicating 1:500.

(4) 4층





(6) 지하층



(변경후)



지하층 평면도

SCALE

1/150

VI. 보험 가입여부

1. 가입보험

(1) 영업배상책임보험

- 상품명 :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한화손해보험)
- 기 간 : 2025년 06월 02일 00시부터 2026년 06월 02일 00시까지

(2) 화재보험

- 상품명 : 일반화재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 기 간 : 2025년 10월 02일 16:00부터 ~ 2026년 10월 02일 16:00까지

(3) 승강기 보험

- 상품명 :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 기 간 : 2025년 10월 28일 00시부터 2026년 10월28일 00시까지



보험증권 한화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계약 기본 사항

증권번호	FA20252413383000	계약일	2025년 09월 21일
계약자	제사당요양원 대항노인요양원지 101-80-12062		
피보험자	05718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0 *****		
보험기간	제사당요양원 250-80-00233		
	2025년 09월 02일 00:00시부터 2026년 09월 02일 00:00시까지		
	이 보험계약에 기재한 증권발행자의 표준약관 기준으로 합니다.		
	1년~계월~일		
	계연평균보험료(790)		

* 본지 서명된 계약의 본인지, 사명(본인)이 아닌 경우 보험 금액이 보장될 수 있으나 회사로 연락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및 한도내역

보험유형	비율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한화손해보험료
배상책임	WON	600,000,000	5,363,800	KRW 5,363,800
합계	WON	600,000,000	5,363,800	KRW 5,363,800

납입유형	납입처	납입비율	납입예정일	비율	보험료	한화손해보험료
일시납	1회차	100%	2025-09-02	WON	5,363,800	KRW 5,363,800

* 보험 사고 발생 시 접수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센터센터(1566-8000)

* 보험사기(고액사기, 허위사기,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취소)는 형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고객상담센터(상담 및 문의) 1566-8000 | 영업지원팀 | 한화생명부 | 02-1566-8000
영업담당자 | 보험대리점 | 한국보험금융(주) | 김홍희 | 010-9892-2279

한화손해보험(주)

대표이사 나재범

발행일 2025.09.01



1/2



에사랑 요양원



보험종류 한화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회사명: 한화손해보험

증권번호

FA2025241539300000000

발행번호

FA202521627318

1.소재지

국내소재 (22172) 인천 미추홀구 미추대로 1 (송도동)

보험명

복지시설배상

보험조건요약

1.특약내용: 복지시설배상

▶ 목적용사상

산출기준

정액+CS.001명 / 정액+CS.001명

보험

노인요양시설

보험기간

배상청구기간

통제기간연장일수

50일

소급일수

2021-06-01

발보지역

대한민국

▶ 담보내역

담보명

대인배상일수

보상한도액

WON

공제금액

요양보호시설(노인요양시설)배상일수

대인배상일수

통제기간연장일수

WON

100,000,000

0

요양보호시설(노인요양시설)배상일수

대인배상일수

통제기간연장일수

WON

100,000,000

500,000

보험조건요약

2.특약내용: 복지시설배상

▶ 목적용사상

목적용사상

복지시설배상

산출기준

정액+CS.001명 / 정액+CS.001명

보험

노인요양시설

시설관리자(노인요양시설)배상일수

대인배상일수

통제기간연장일수

50일

소급일수

2021-06-01

발보지역

대한민국

▶ 담보내역

담보명

대인

보상한도액

WON

공제금액

시설관리자(노인요양시설)배상일수

대인

통제기간연장일수

WON

100,000,000

0

시설관리자(노인요양시설)배상일수

대인

통제기간연장일수

WON

500,000,000

100,000

시설관리자(노인요양시설)배상일수

대인

통제기간연장일수

WON

10,000,000

100,000

보험조건요약

한화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요양보호시설(노인요양시설)배상일수

시설관리자(노인요양시설)배상일수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배상일수

보험조건요약

▶ 계약사항

* 보험사고발생시 접수처: 한화손해보험 고객센터(1566-8000)

고객상담센터 (상설) 1566-8000 영업부서 (연락처) 02-1566-8000

영업담당자 최영미 (한국보험협회) 010-3893-2279

한화손해보험(주)

대표이사 나재범

정확도 99.99%



2/3



YESARANG
에사랑 요양원

2. 기본사항

2. 제품보장사항

* 교육활동/활동 및 보정가입금액

* 최학대출매상(특권포함) 보장사업

② 토원가업태성 및 보살한도액

● 가입학원

* 열원시험

연도	예산	실적	잔액	잔액	잔액
2021-05-20438	2021-05-20438	2021-05-20438	2021-05-20438	2021-05-20438	2021-05-20438



Ⅶ. 기관의 특성 및 우수사례

1. 기관의 특성

-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시설 생활을 위한 내집 같은 분위기 조성
- 어르신들의 정서지원을 위한 종교생활 지원 (성당, 교회 방문기도)
- 지역 사회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노인복지회관 실버 봉사단, 송의교회 하모니카 연주단 등)
- 지역행사 참여 및 사회적응 활동 수행
(계절행사 참여, 마트와 재래시장 장보기 등)

2. 우수사례

- 원예활동을 통하여 직접 식물을 심고 가꾸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와 수확하는 성취감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



- 어르신 기능에 맞춘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건강 및 정서 상태 호전으로 가정으로 귀가하신 사례 등
- 지역행사 참여, 사회적응 활동 프로그램을 가족지지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시설과

- 어르신 기능에 맞춘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건강 및 정서 상태 호전으로 가정으로 귀가하신 사례 등
- 지역행사 참여, 사회적응 활동 프로그램을 가족지지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시설과 보호자 관계에 높은 신뢰도 형성





화도정



